

충청북도재해영향평가조례중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2년 4월 3일, 충청북도지사
- 나. 회부일자 : 2002년 4월 4일
- 다. 상정일자 : 제195회 임시회 제1차 관광건설위원회(2002. 4. 12)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및 의결

2. 제안설명

(제안설명자 : 건설교통국장 김 종 운)

가. 제안이유

- 지방자치단체 위원회 정비 및 운영지침(행정자치부)에 의거 충청북도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기능을
- 기 구성된 충청북도지방하천관리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임

나. 주요골자

- 충청북도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하지 않고 충청북도지방하천관리위원회에서 충청북도재해영향평가 심의사항을 대행할 수 있도록 함(제12조제7항)
-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처리를 위한 간사를 “안전관리과장”에서 “재해방재담당사무관”으로 함(제15조제4항)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 신 익 수)

- 충청북도재해영향평가조례중개정조례안을 검토한 바
-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과 정비 차원에서 별도로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를 구성하지 않고 기존에 구성되어 있는 지방하천관리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도록 조항을 신설하고
- 위원회 사무처리를 위한 간사를 실무담당으로 조정하려는 것으로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됨

4. 질의답변 요지 : 생략

5. 토론 요지 : 없음

6. 수정안의 요지 : 없음

7. 심사결과 : 원안가결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9. 붙임서류 : 충청북도재해영향평가조례중개정조례안

충청북도재해영향평가조례중개정조례안

(충청북도의회 제199회 제2차 부록)

충청북도재해영향평가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⑦도지사는 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하지 않고 충청북도지방하천관리 위원회에서 충청북도재해영향평가 심의사항을 대행할 수 있다.

제15조제4항중 "안전관리과장"을 "재해방재담당사무관"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2조 (충청북도재해영향평가심의 위원회의 구성) ①내지 ⑥(생략)</p> <p><u>< 신 설 ></u></p>	<p>제12조 (충청북도재해영향평가심의 위원회의 구성) ①내지 ⑥(현행과 같음)</p> <p><u>⑦ 도지사는 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하지 않고 충청북도지방하천관리 위원회에서 충청북도재해영향평가 심의사항을 대행할 수 있다</u></p>
<p>제15조(위원회의 운영) ①내지③(생략)</p> <p>④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1인을 두되 간사는 안전관리과장이 된다</p>	<p>제15조(위원회의 운영) ①내지③(현행과 같음)</p> <p>④ ----- ----- <u>재해방재담당사무관</u>----</p>

관계법령 발췌

□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제4조(영향평가대상사업 등) ①내지 ③(생략)

④ 시·도지사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대상사업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에 대하여도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당해 시·도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⑤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가 영향평가를 실시하는 경우에 있어서의 평가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해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 하천법

제60조(하천관리위원회의 설치) 하천관리에 필요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고 우수사용에 관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건설교통부에 중앙하천관리위원회를 두고, 시도에 지방하천관리위원회를 둔다

제61조(하천관리위원회의 기능 및 관할) ①중앙하천관리위원회는 국가하천에 관한 다음사항을 관장하고, 지방하천관리위원회는 지방1급 및 지방 2급하천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1. 하천관리에 관한 다음각목의 사항의 심의 다만, 라 목의 경우에는 중앙하천관리위원회에 한한다.

가. 하천정비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

나. 하천구역·하천예정지·연안구역의 지정 및 변경

다. 하천유지유량의 산정등 유역조사와 관련된 중요한 사항

라. 수자원계획 및 유역계획의 수립 및 변경

마. 하천의 재해예방에 관한 사항

바. 하천의 건전화 방지에 관한사항

(19) 음쓰용유사음쓰플 코탐(회)00S

2. 유수사용분쟁에 대한 심사·조정

2의2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하천관리위원회의 기능으로 되어 있는 사항

3. 기타 하천관리에 관한사항으로서 하천관리위원회의위원장이 요청하는 사항

②제1항제2호의 분쟁 중 국가또는 시도가 그 당사자이거나 2이상의 시도의 구역에 걸치는 분쟁의 심사·조정은 중앙하천관리위원회가 이를 관장한다.

제62조(하천관리위원회의 구성) ①중앙하천관리위원회는 위원장1인과 부위원장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지방하천관리위원회는 위원장1인과 부위원장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로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중앙하천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은 건설교통부 소속1급공무원중에서, 부위원장은 건설교통부소속 2급 또는 3급공무원중에서 건설교통부장관이 지명하는 자가 되고, 위원은 관련행정기관의 공무원과 다음 각호의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건설교통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가 된다.

1.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에서 하천공학·환경공학 수문학 수리학 경제학 또는 법률학을 가르치는 조교수이상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
2.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
3. 수자원개발·하천도시환경 법률 및 경제에 관한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③지방하천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은 당해 시·도 소속 3급이상 공무원중에서 시도지사가 지명하는 자가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가되며 위원은 관계행정기관의 공무원과 제2항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당해시도지사가 임명또는 위촉한다

④하천관리위원회의 위원중 공무원이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수 있으며 보궐위원의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